

#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449호
- 다. 제출일자: 2020. 4. 3.
- 라. 회부일자: 2020. 4. 8.

### 2. 제 안 사 유

- 현재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서남권(양천구, 구로구 등)의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민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20년 1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소음대책 지역(13.1km<sup>2</sup>)에서 인근지역(13.5km<sup>2</sup>)까지 확대됨에 따라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로구에 주민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며
- 공항소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서울특별시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 위탁기간: 2년 6개월('20년 7월~'22년 12월)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신규위탁)

#### 나. 주요 위탁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민원서류 접수대행 및 상담
- 피해주민 소통 및 교육사업

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4000, '20.3.24.)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년 120백만원('21년 150백만원)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1항<sup>1)</sup>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및 제6조>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1)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나. 검토 의견

###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2020년 1월에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 센터와 분소간의 업무분담 등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로구 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를 필두로 총 2개 센터와 3개 분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기존의 양천구 주민지원센터는 현재 업무에 분소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고척동 주민지원센터는 지원범위가 고척동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주민민원 상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로 한정함
- 분소는 피해주민 민원 상담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교육 홍보사업 및 간담회 개최는 총괄기관인 양천구 주민지원센터에서 수행하되 분소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소는 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로동의 경우 주민 갈등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분소를 설치함

#### <주민지원센터와 분소의 설치 지역, 지원내용 및 세부 사업>

구분	지 역	지원내용	세부사업
주민 지원 센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주민민원 상담, 서류 대행업무 - 소음측정 및 연구업무 - 지역주민 소음교육 및 홍보행사 업무 -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구로동) 분소 관리 총괄
	구로구 (고척동)		-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및 소음교육 업무
분소	강서구	분소 개설 및 운영	- 피해주민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		

##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의 개요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지원형 사무형 위탁<sup>2)</sup>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b>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b> |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2) 민간위탁의 유형은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본 위탁사업은 2020년 2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3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사항을 단서 조건으로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음
- 다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고척동 주민지원 센터의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어긋나는 행위임.

<2020년 제2차 민간위탁 운용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심의사유
생활환경과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무/신규(공모)	2년6개월	적정	(권고)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 검토 의견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상 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는 지역별로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